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이슈리뷰

- 제7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나타난 모든 여성과
여아의 사법접근권과 성평등 국제규범의 쟁점
정연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 대응을 위한 한국-호주 연구협력의
확장과 향후 과제: 호주 모나시대학교 방문 프로그램과
후속 간담회를 중심으로
김효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제7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나타난 모든 여성과 여아의 사법접근권과 성평등 국제규범의 쟁점

정연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제7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이하 CSW70)는 2026년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의 우선의제는 “모든 여성과 여아의 사법 접근성 보장 및 강화”로, 포용적이고 공정한 법체계의 촉진, 차별적 법·정책·관행의 제거, 구조적 장벽의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의 기능위원회로, 회원국 정부, 유엔기구,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가 참여하여 성평등과 여성·여아의 권리 증진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회의이다. 이번 CSW70에서도 각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모든 여성과 여아의 사법접근권(이하 ‘사법접근권’),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디지털·AI 환경에서의 권리 보장, 성평등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을 논의하였다.

통상 CSW의 합의결론(agreed conclusions)은 회기 말 무렵까지 회원국 간 문안 협상을 거쳐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CSW70에서는 회기 첫날 오후 제3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문안의 채택 시점과 내용을 둘러싸고 이견이 표면화되었다.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채택 연기를 요청하였고, 특히 미국은 회의 중 구두 수정안을 통해 gender의 의미, 성·재생산 건강, 다중·교차적 차별, 허위정보·혐오표현 대응, 배상, 성별 균형과 관련하여 일부 문구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의장인 마리차 찬 발베르데는 해당 문안이 약 두 달간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현 단계에서 도달 가능한 가장 균형 잡힌 결과라고 설명하며 최종 문안 채택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미국 수정안 전체에 대한 표결이 먼저 진행되었고, 그 결과 미국 수정안은 찬성 1, 반대 26, 기권 14로 부결되었다. 이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최

중 문안 전체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최종 합의결론은 전체 44개국 중 찬성 37, 반대 1, 기권 6으로 채택되었다¹⁾.

미국이 gender의 의미를 생물학적 성에 국한하고, 성·재생산 건강 관련 문구를 제한하려 한 점 등은 이번 합의결론 채택 과정이 단지 절차상의 이례적 상황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평등 국제규범을 둘러싼 백래시가 공식 협상 과정에서 표면화된 사례였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후 일반토의와 고위급 회의에서 여러 국가는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적 백래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합의결론이 컨센서스가 아닌 표결로 채택된 상황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미국은 발언 중 UN Women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자국의 UN Women 탈퇴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이번 논쟁이 개별 문구의 수정 여부를 넘어 CSW와 UN Women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온 성평등 국제규범의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성평등 국제규범을 둘러싼 백래시가 더 이상 일부 국가나 집단의 주변적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의 성평등 의제 논의와 합의 형성 전체를 제약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긴장 속에서 성평등 국제규범의 후퇴를 경계하고 사법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개회식 주요 발언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여성과 여아의 사법 접근성을 성평등 실현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남성에게 보장되는 법적 권리에 비해 여성이 누리는 법적 권리가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분쟁, 기후위기, 기술 변화

속에서 여성과 여아가 더 큰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며, 여성 권리에 대한 백래시가 이러한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알고리즘 편향과 온라인 여성혐오가 확대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기술 기업의 책임과 디지털 성별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UN Women 총재를 비롯한 주요 기조연설자들 역시 폭력, 노동, 법률지원, 기술과 데이터 활용 등의 영역에서 여성과 여아가 직면한 구조적 장벽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성평등 규범에 대한 반발이 이러한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필자가 참석한 CSW70 첫 주 주요 본회의를 중심으로, 합의결론의 주요 내용과 각국 발언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회식과 일반토의, 우선의제인 “모든 여성과 여아의 사법 접근성 보장 및 강화”에 관한 장관급 원탁회의와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관련 고위급 회의에서 제기된 논의를 정리한다. 2장에서는 합의결론에 나타난 사법접근권의 확장된 의미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각국 발언에 나타난 사법접근권 강화 전략을 법제 개혁, 피해자 중심 통합지원,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한 실질적 접근성, 데이터와 성인지 예산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주요하게 제기된 여성과 여아 대상 폭력 대응 의제를 페미사이드, 생존자 중심 접근, 남성과 소년의 참여, 디지털·AI 기반 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한국의 여성폭력 대응과 사법접근권 강화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Health Policy Watch(2026.3.10.)“Only US Votes Against Women’s Rights Document at UN Commission). <https://healthpolicy-watch.news/us-isolated-in-opposition-to-un-womens-rights-document/> (검색일:2026.5.12.)

2. 합의결론에 나타난 사법접근권의 확장

1) 사법접근권의 의미와 구조적 장벽

CSW70의 합의결론²⁾은 사법접근권을 단순히 법원이나 사법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 한정하지 않는다. 합의결론은 북경선언과 행동강령,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기존 국제인권규범을 재확인하면서, 여성과 여아가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침해된 권리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법접근권은 성평등과 여성·여아의 역량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자,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2) 차별적 법·관행의 개선과 폭력 피해자의 구제

여성과 여아의 사법접근을 가로막는 요인은 단순히 개인의 법률 지식 부족이나 사법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문제로 볼 수 없다. 차별적 법과 관행, 성별 고정관념, 부정적 사회규범, 낙인, 권력 불균형, 다중적·교차적 차별은 여성과 여아가 효과적인 구제와 보호를 받는 것을 어렵게 하는 주요 장벽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빈곤, 비공식 고용, 교육·보건·양질의 일자리 접근성 부족, 기후위기, 분쟁과 인도주의 위기 등 사회경제적 조건 역시 사법접근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강조되었다. 이는 사법접근권이 사법제도의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고, 여성과 여아가

처한 사회적 조건 전반을 개선하는 과제와 결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합의결론은 각국 정부가 2030년까지 여성과 여아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폭넓게 제시하였다. 우선 차별적 법률과 정책, 관행을 점검하고 개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여성성기훼손, 아동·조혼 및 강제혼, 가족법, 재산권, 금융 접근, 형사법 등 다양한 법 영역에서 여성과 여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을 확인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과 정책을 수립·이행·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을 주류화하고, 새로운 법률이나 기존 법률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역시 이번 합의결론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합의결론은 공적·사적 영역,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의 예방·철폐·대응을 명시하며, 가정폭력, 강간, 성별에 기반한 살해와 페미사이드, 인신매매, 성적 착취와 학대, 아동·조혼 및 강제혼, 여성성기훼손, 성희롱뿐 아니라 경제적 학대와 재정적 통제까지 포함하였다. 특히 피해자와 생존자가 적시에 사법절차와 효과적인 구제, 피해 회복 및 배상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재(再)피해를 방지하는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신고·사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2026). Ensuring and strengthening access to justice for all women and girls, including by promoting inclusive and equitable legal systems, eliminating discriminatory laws, policies and practices and addressing structural barriers: Draft agreed conclusions (E/CN.6/2026/L.2). United Nations.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105187?v=pdf> (검색일: 2026.5.12.)

3) 통합지원과 실질적 접근성 보장

이러한 폭력 대응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연계와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수적이다. 법 집행기관, 법원, 검찰, 법률지원, 교정·보호관찰, 노동감독, 아동보호, 보건 및 사회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피해자·생존자 중심의 의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과 여아가 폭력이나 권리침해를 경험했을 때 여러 기관을 반복적으로 찾아다니며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해야 하는 구조를 완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 경로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이다. 또한 분쟁, 재난, 인도주의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성과 여아의 사법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전체 차원의 전략과 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강조되었다.

실질적 접근성의 측면에서는 법률지원과 재정 지원의 중요성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여성과 여아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법적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필요한 경우 무료 또는 저비용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한 법률지원체계가 강조되었고, 행정·법적 절차의 간소화, 수수료 면제, 법률문해 교육,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역시 중요한 조치로 제시되었다. 또한 쉼터, 심리상담, 보건의료, 교육·사회서비스, 경제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피해자·생존자 중심 서비스에 대해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합의결론은 권리의 선언만으로는 사법접근권이 보장될 수 없으며,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4) 디지털·AI 환경과 데이터 기반 정책

이번 합의결론에서 주목할 또 다른 지점은 사법 접근권을 디지털·AI 환경과 적극적으로 연결하였다는 점이다. 디지털 격차, 특히 성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기반 사법서비스와 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동시에 디지털화가 새로운 차별을 만들지 않도록 데이터 보호, 투명성, 알고리즘 책임성, 젠더 편향 제거, 인권 기반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소셜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인공지능, 예측 알고리즘 등 새로운 기술이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발생시키거나 증폭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기술매개 젠더폭력에 대한 예방, 책임성, 효과적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사법접근권이 더 이상 오프라인 사법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권리침해와 플랫폼 책임, 기술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데이터와 증거기반 정책 역시 중요한 축으로 제시되었다. 합의결론은 국가 통계체계와 사법 부문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고, 소득, 성별, 연령, 혼인상태, 이주 지위, 장애, 지역, 교육 수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특히 페미사이드를 포함한 폭력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확대하여 정책입안자, 연구자, 옹호자들이 예방과 보호, 비교 분석, 책무성 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여성폭력 대응에서 사후적 처벌뿐 아니라 예방, 보호, 책무성 강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5)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기반 사법지원

마지막으로 합의결론은 시민사회와 여성단체의 역할을 사법접근권 강화의 핵심 요소로 위치시켰다. 여성권 단체, 청년 주도 단체, 페미니스트 그룹, 원주민 여성단체, 여성 인권옹호자, 여성 언론인 등 다양한 시민사회 행위자는 차별과 구조적 장벽에 대응하고, 여성과 여아가 권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제시되었다. 합의결론은 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환경을 보장하고, 협박·괴롭힘·보복·폭력으로부터 보호하며, 예측 가능하고 유연한 다년간 재정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비(非)변호사 지역사회 사법조력자나 준법률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는데, 이는 사법기관과 거리가 먼 지역사회에서 여성과 여아가 자신의 권리와 구제수단을 이해하고 공식 사법체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CSW70 합의결론은 사법접근권을 법률상 권리나 사법기관 이용 가능성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여성과 여아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조건 전반의 문제로 확장하였다. 법제 개혁, 성인지적 사법절차, 피해자 중심 통합지원, 충분한 재정과 법률지원, 디지털·AI 거버넌스, 데이터 기반 정책,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모두 이러한 확장된 사법접근권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제시되었다.

3. 국가별 발언에 나타난 사법접근권 강화 전략

합의결론에서 제시된 사법접근권의 확장된 의미는 각국 발언에서 다양한 정책 사례와 이행 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 각국은 법제 개혁, 피해자 중심 통합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 데이터 구축과 성인지 예산 등을 중심으로 여성과 여아의 사법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였다.

1) 법제 개혁과 성인지적 사법체계

먼저 여러 국가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및 차별을 보다 명확히 규율하기 위한 법제 개혁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였다. 스위스는 강간의 정의 확대, 스토킹 범죄 신설,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 강화를 통해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사법 종사자 대상 교육을 통해 성인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벨기에는 성범죄의 정의를 동의 여부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페미사이드 방지법을 제정하여 젠더 관련 살해에 대한 포괄적 예방 및 대응 프레임 마련했다고 설명하였다. 튀니지는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폭력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폭력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경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사법체계의 전문화와 접근성 확대 역시 중요한 흐름으로 나타났다. 과테말라는 페미사이드 및 여성 폭력 전담 기관과 전담 재판소를 설치하고, 원주민 여성과 여아를 위해 이중언어 판사 훈련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문화적·언어적 장벽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소개하였다. 필리핀은 법원, 검찰, 법집행 기관, 공공 변호인이 협력하여 사건 적체를 해소하

고 공판 과정을 단축하는 ‘사법 구역’을 설정하고, 지역사회로 직접 찾아가는 ‘사법 카라반’을 통해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는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뿐 아니라 전담 사법체계, 전문 인력, 지역사회 기반 법률서비스가 함께 필요함을 보여준다.

2) 피해자 중심 통합지원과 다부문 협력

각국 발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또 다른 전략은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한 경로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지원 체계였다. 벨기에는 전국적인 성폭력 치료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 지원, 심리상담, 법의학 검사, 고소 접수를 한 장소에서 24시간 제공하는 피해자 중심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벨기에 대표는 이를 “법적 권리가 실제 보호, 책임성, 정의로 전환되기 위한 장치”로 설명하며, 시민사회와 독립적 평등기구의 역할도 강조하였다. 포르투갈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게 긴급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찰·검찰·법원·보건·사회서비스 간 협력, 공동 위험평가, 전자감독을 활용하여 초기 대응과 재범 방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고위급 회의에서도 폭력 대응은 사법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보건, 사회보호, 교육, 지방행정, 디지털 정책을 포함한 다부문 협력의 문제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젠더기반폭력 및 페미사이드 신속대응팀, 통합 원스톱 시설, 전담 성범죄 법원, 쉼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팔 역시 원스톱 위기관리센터, 장기 재활센터와 안전가옥, 무료 신고전화, 의료·법률·보상·재활 지원 기금, 지역 경찰서 내 서비스센터 등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법접근권이 법률절차에 접근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고 이후 보호와 회복까지 연결되는 지원 경로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3)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한 실질적 접근성

여성폭력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원뿐 아니라 주거, 소득, 돌봄, 이동, 안전 등 사회경제적 조건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여러 발언에서 확인되었다. 독일은 「Violence Support Services Act」를 통해 폭력 피해 여성과 그 자녀가 보호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초의 개별적 법적 권리, 즉 청구권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폭력 피해자 지원을 시혜적 서비스가 아니라 권리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독일은 암수 범죄 조사를 통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의 미신고 규모를 확인하고, 소득·거주지·신체 조건과 무관하게 전국적이고 접근 가능한 무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브라질과 이탈리아의 사례 역시 사법접근권을 경제적 자립과 연결하여 이해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브라질은 폭력의 배경에 경제적 의존성이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사회프로그램의 우선 수혜자로 여성을 지정하여 경제적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결단을 소개하였다. 이탈리아는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유 소득’과 창업 지원을 위한 ‘자유 마이크로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피해자가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사법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계와 돌봄, 주거와 같은 조건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4) 데이터와 성인지 예산을 통한 이행 기반 강화

마지막으로, 여러 국가는 사법접근권과 여성폭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와 예산을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솔로몬제도는 여성 대상 폭력 대응을 법정부적 의무로 규정하는 성평등 프레임워크를 국가개발전략에 통합하고, 성인지 예산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재정 정책과 실제 예산 수요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국 재정관리체계의 성인지성을 평가하고, 향후 4년간 5개 부처를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 대상 폭력의 유병률 조사와 경제적 비용 연구 결과를 성인지 예산 배정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데이터 기반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젠더기반폭력과 페미사이드 유병률 조사 및 국가 페미사이드 연구를 통해 증거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 보건, 사회개발, 사법 부문이 추세를 추적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여성폭력 대응과 사법접근권 강화가 선언이나 법률 제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예산 배정, 행정데이터, 유병률 조사,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같은 이행 기반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각국 발언은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이 법제 개혁만으로 한정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법률상 권리가 실제 권리 행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담 법원과 성인지적 사법절차,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 경제적 자립과 돌봄 지원, 데이터와 예산에 기반한 이행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여성·여아 대상

폭력 대응의 주요 쟁점, 특히 페미사이드, 생존자 중심 정의, 디지털·AI 기반 폭력 대응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4. 여성·여아 대상 폭력 대응의 주요 의제

CSW70에서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대응이 사법접근권 논의의 핵심 축으로 다루어졌다. 이는 폭력 피해자가 사법절차에 접근하는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폭력의 예방,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 가해자 책임성, 재발방지, 데이터 구축과 정책 환류까지 포괄하는 문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관련 고위급 회의에서는 페미사이드, 생존자 중심 접근, 남성과 소년의 참여, 디지털·AI 기반 폭력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1) 페미사이드 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기반 예방정책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페미사이드(femicide)를 데이터 기반 예방정책과 연결하여 강조한 점이었다. 고위급 회의의 전문가 발언에서는 여성에 대한 젠더 관련 살해를 전체 살인 사건의 일부로 처리할 경우, 피해자-가해자 관계, 범행 전 폭력 이력, 스토킹, 위협, 통제, 성폭력 맥락 등 여성살해의 구조적 특성이 가려진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많은 페미사이드 사건은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 폭력과 통제, 위협이 누적된 결과일 수 있으므로, 페미사이드 대응은 사건 발생 이후의 처벌을 넘어 사망 이전의 위협 신호를 식별하고 고위험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가해자 관계, 이전 신고 이력, 보호명령 여부, 기관 접촉 이력, 범행 전 위협과 통제, 남겨진 자녀의 상황 등을 포함하는 페미사이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위협평가, 기관 간 대응 공백 파악, 사망사건 검토체계(death review), 남겨진 가족과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

국가별 발언에서도 페미사이드는 법제화와 통합적 대응의 핵심 의제로 제시되었다. 루마니아는 페미사이드 범죄화, AI를 포함한 사이버 폭력 정의 확대, 교차적 차별의 인정 등을 포함한 법제 개혁을 소개하였다. 브라질은 2025년 한 해 동안 1,568명의 여성이 살해되었고, 상당수가 현재 또는 과거의 파트너에 의해 자신의 집 안에서 살해되었다고 밝히며, 페미사이드가 젠더 기반 폭력의 가장 극단적인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동시에 범행 이전에 괴롭힘, 위협, 통제, 공격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페미사이드 대응 협약과 가해자 전자감독, 남성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소개하였다.

2) 생존자 중심 정의와 공공 인프라로서의 지원체계

여성·여아 대상 폭력 대응에서 또 하나의 핵심 내용은 생존자 중심 접근이었다. 고위급 회의 전문가 발언에서는 생존자 중심 접근이 단순한 친절이나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성별에 따른 피해 경험을 고려한 제도 운영 원칙임이 강조되었다. 이는 생존자가 제도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생존자의 안전, 존엄, 회복, 통제감 회복을 중심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접근은 폭력 피해자가 여러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피해 사실을 설명해야 하거나, 신고 과정에서 낙인과 불신, 조정 압박, 가족 해체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생존자 중심 체계는 하나의 안전한 진입 경로, 훈련된 초기 대응, 조정된 의뢰체계, 비밀보장,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절차, 그리고 제도적 실패에 대한 책무성을 필요로 한다. 또한 생존자 중심 정의는 형사처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보호명령이 실제로 집행되는지, 양육권 결정이 피해자와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는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폭력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한다.

이 점에서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는 생존자 중심 접근의 핵심 주체로 제시되었다. 회의에서는 여성단체가 오랫동안 핫라인, 쉼터, 상담, 법률지원, 신뢰 기반의 지원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많은 경우 생존자가 가장 먼저 접근하는 안전한 경로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사회가 국가의 책임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생존자 중심 서비스는 일시적 사업이나 보조적 서비스가 아니라 충분한 재정과 제도적 책임을 갖춘 공공 인프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3) 남성과 소년의 참여와 사회규범 변화

여성·여아 대상 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남성과 소년의 참여도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고위급 회의에서 White Ribbon Canada는 남성과 소년을 단순히 잠재적 가해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폭력 예방과 성평등 실현의 동맹자이자 변화의 수혜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접근은 아버지, 아들, 교

사, 코치, 지역사회 지도자 등 다양한 남성 주체가 유해한 성별규범과 폭력 문화를 바꾸는 데 참여해야 한다는 관점에 기반한다.

특히 폭력 예방은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청소년기부터 건강한 관계, 동의, 평등, 비폭력적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혐오적 콘텐츠와 유해한 남성성 담론이 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역시 중요한 예방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국가별 발언에서도 브라질은 페미사이드 대응 정책에서 남성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고, 바베이도스는 남성과 소년이 폭력 예방의 해결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4) 디지털·AI 기반 폭력 대응과 플랫폼 책임성

마지막으로, 디지털·AI 기반 폭력은 이번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새로운 도전이었다. 여성과 여아의 디지털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공간은 교육, 경제활동, 정치참여, 시민사회 활동의 중요한 장이 되었지만, 동시에 괴롭힘, 비동의의 이미지 유포, 사칭, 신상공개, 성폭력 위협, 조직적 공격이 발생하는 공간이 되었다. 특히 여성 정치인, 언론인, 인권 옹호자, 활동가들은 온라인 폭력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격은 이들을 공적 담론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낳는다.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의 특수성은 확산 속도와 지속성에 있다. 온라인상 유해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플랫폼과 국경을 넘어 복제·확산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일단 유포가 시작된 이후에는 피해를 통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생성형 AI의 확산은 문

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AI로 생성된 딥페이크와 조작 이미지는 여성에 대한 비동의의 성적 이미지 제작, 명예훼손, 평판 공격에 악용될 수 있으며, 탐지와 책임 추궁도 어렵게 한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기술매개 폭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플랫폼 책임성이 함께 강조되었다. 전문가 발언에서는 기술매개 폭력을 규율하기 위한 법적 틀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법은 피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 정당한 비판 활동을 함께 고려하는 인권 기반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플랫폼이 자사 규칙을 명확히 하고 탐지 시스템에 투자하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신고·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국가별 발언에서도 루마니아는 사이버 폭력의 정의를 AI 관련 행위까지 확대하는 법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사이프러스는 사이버 폭력을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폭력 유형 중 하나로 지적하며 AI 오남용과 온라인 학대 대응을 유럽 차원의 우선과제로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CSW70에서 여성·여아 대상 폭력 대응은 법률상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에 국한되지 않았다. 페미사이드의 명명과 데이터 구축은 치명적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증거 기반 정책의 출발점으로 제시되었고, 생존자 중심 접근은 사법절차와 지원체계가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남성과 소년의 참여는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규범 변화 전략으로 강조되었으며, 디지털·AI 기반 폭력 대응은 플랫폼 책임성과 기술 거버넌스를 사법접근권의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이러한 논의는 여성폭력 대응이 사후적 구제에서 예방, 데이터, 사회규범 변화, 디지털 책임성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나가며

CSW70은 “모든 여성과 여아의 사법 접근성 보장 및 강화”를 우선의제로 다루었지만, 회의에서 논의된 사법접근권은 법원이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한정되지 않았다. 합의결론과 각국 발언에서 사법접근권은 차별적 법과 관행의 제거, 성인지적 사법체계 구축, 피해자 중심 통합지원, 경제적·사회적 조건의 보장, 데이터와 예산에 기반한 이행체계, 디지털·AI 환경에서의 권리 보호를 포함하는 폭넓은 정책 의제로 제시되었다. 이는 여성과 여아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형식적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하며 침해된 권리에 대해 보호와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대응은 사법접근권 논의의 핵심 영역으로 부각되었다. 그중에서도 페미사이드의 명명과 데이터 구축은 여성살해를 일반 살인 통계 속에 묻히지 않게 하고, 젠더폭력의 규모와 유형, 사건 발생 맥락을 정책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이는 젠더폭력 대응을 축적된 자료에 근거한 증거기반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젠더폭력과 성평등 의제를 축소하거나 이념화하려는 백래시에 대응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생존자 중심 접근, 남성과 소년의 참여, 온라인 여성 혐오와 기술매개 폭력 대응, 플랫폼 책임성 강화와 같은 주요 쟁점은 젠더폭력 대응이 법률과 지원체계 뿐 아니라 사회규범과 디지털 환경의 변화까지 포괄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도 분명하다. 그동안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

력 대응을 위한 법제와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CSW70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향후 정책은 개별 법률의 제·개정이나 사후적 피해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통합적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AI 기반 폭력 대응, 피해자 중심 원스톱 지원, 성착취물의 재유포와 반복 피해에 대한 장기적 관리, 경제적 자립과 안전한 주거지원,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성인지 예산은 한국의 여성폭력 대응체계에서도 더욱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편, 이번 CSW70은 성평등 국제규범을 둘러싼 백래시가 더 이상 주변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의 합의 형성 과정 자체를 제약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합의결론이 컨센서스가 아닌 표결로 채택된 과정은 사법접근권 강화라는 정책 의제와 함께, 성평등 규범의 유지와 후퇴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 장면이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기존 국제인권규범과 성평등 원칙을 국내 정책 이행과 연결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결국 CSW70이 제시한 사법접근권은 법 앞의 형식적 평등을 넘어, 여성과 여아가 폭력과 차별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 논의의 흐름을 바탕으로 젠더폭력 대응과 사법접근권 강화를 상호 연결된 정책 영역으로 인식하고, 법제·지원체계·데이터·예산·디지털 거버넌스를 통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Health Policy Watch(2026.3.10.)“Only US Votes Against Women’s Rights Document at UN Commission).
<https://healthpolicy-watch.news/us-isolated-in-opposition-to-un-womens-rights-document/> (검색
일:2026.5.12.)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2026). Ensuring and strengthening access to justice
for all women and girls, including by promoting inclusive and equitable legal systems, eliminating
discriminatory laws, policies and practices and addressing structural barriers: Draft agreed
conclusions (E/CN.6/2026/L.2). United Nations.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105187?v=pdf>
(검색일: 2026.5.12.)